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산재보험에 관한 문의

Q 작년에 사택으로 사용할 집을 전세계약(1년)을 했는데 계약당시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닌 가족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계약당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을 확인도 안했구요) 계약 후 약 6개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주인이 모르는 일이라며 집을 비워달라고만 합니다. 전세금은 계약자와 해결하라하고, 근데 계약자는 괜찮다며, 그냥 살라고만 합니다. 지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연장된 상태이며 집주인은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소유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도 받지 못했고 계다가 계약서도 분실된 상태이며 계약자와의 관계는 통장의 입금내역과 계약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만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계약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는지요.

A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조속히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진정한 소유자나 그로부터 매수한 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없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면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결국 귀하는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세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돈장 허가의 관한 문의

Q 약20년간 무허가로 농지사육을 하던 양돈장을 매입했습니다. 둘째돈사로 허가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동조 동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년간 무허가로 사용되던 양돈장을 인수하였다면 관할행정청에 이를 등

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축산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인수하신 양돈장의 시설 및 장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신 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톱밥돈사의 경우 전에는 친환경적이라고 하여 행정기관에서 여러가지 권장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일반돈사에 비해 어떤 특례를 적용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문의

Q 데지 약 3,5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05년 3월경부터 도로 확장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저희 농장에서 채 2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발파 및 소음, 진동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양돈장에 돼지들이 입은 피해와 도로확장 포장공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돼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돼지들이 폐사를 하거나 분만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되는바, 이와 같은 문제가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소음측정 및 돼지들이 폐사한 사진 등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돼지들이 폐사할 경우 가까운 가축병원 내지는 관할기관에 문의하시어 폐사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도로확장공사 시공업체 또는 해당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양돈장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관할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공사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보면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라며, 연락을 주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사랑 돼지사랑